

부분품 품목분류 어떻게 하는가?

오수교 관세사 KPMG세정관세법인고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못지않게 재료나 부분품의 품목 분류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완제품과 재료나 부분품의 품목번호를 비교하여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완제품과 재료나 부분품의 품목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나 부분품은 원산지물품이어야만 한다. 당연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재료나 부분품의 종류와 그에 다른 가격이 정해져야만 한다.

특히 부분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정의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계와 자동차의 부분품을 중심으로 해당 규정과 각종 사례를 통하여 품목 분류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분품의 정의

법체계상 해당 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세율표의 많은 곳에 “부분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에 관한 분류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부분품(part 또는 부품)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기계나 장치, 제품 등의 전체 속에서 이를 이루는 개별적인 구성 부분이 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며, 관세청 예규(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2014.3.31. 개정)에서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세청 예규는 수입기계류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전적 정의보다 그 적용 범위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88년 HS 시행 당시에 미국세관 직원의 교육용으로 만든 “미국신관세율표(H.S)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 부분품의 정의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즉, 부분품이란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물품에 결합하여 사용되고,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형태나 다른 특성으로 보아 전용되거나 주로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이다.

이와 같은 부분품은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스크루나 스프링과 같이 하나의 재료로만 된 간단한 것부터 액체펌프나 기어박스 또는 전동기와 같이 여러 가지재료와 구성요소(부분품을 포함한다)^①로 된 복잡한 물품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액체펌프나 전동기와 같이 독립적인 기능을 지닌 것이라도 다른 물품에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분품으로 취급되며, 부분품은 사용범위에 따라 전용부분품과 범용부분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부분품의 유형>

스크루(철강) [제7318호]	스프링(철강) [제7320호]	액체펌프 [제8413호]	기어박스 ^②	전동기 [제8501호]
				

① 이 글에서 구성요소에는 부분품이 포함된다. 문맥에 따라 각각 또는 같이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기어박스는 자동차용은 제8708호에, 그 밖의 기계용은 제8483호로 각각 분류된다.

2. 부분품 분류 기준 및 방법

부분품 분류규정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계류나 전기기기(제16부), 수송기기(제17부), 정밀기기나 측정기기(제90류) 등의 부분품의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중요한 부분품의 분류기준〉

구분	규정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 제8544호 · 제8545호 · 제8546호나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제16부의 주 제1호 · 제84류의 주 제1호와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487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나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나 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제17부 주3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제90류 주2	제90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 제85류 · 제90류나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 · 제8548호와 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 · 제9013호나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

〈표1〉에서 살펴본 부분품의 분류규정과 제외규정(제16부 주 제1호, 제84류 주 제1호, 제85류 주 제1호, 제17부 주 제1호, 제90류 주 제1호 등)^③을 종합하면 부분품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열거된(특정) 호^④로 분류하는 것과 재료에 의한 분류는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구분하는 주된 이유는 열거된(특정) 호로 분류하는 것은 재료나 구성요소에 상관없이 하나의 호로만 분류(그림2)의 하단 물품 참조)되는 것이라면, 재료에 의한 분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라도 재료의 종류에 따라 여러 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다.(〈그림3〉과 〈그림4〉 참조)

2-1. 열거된(특정) 호로 분류

부분품을 분류할 때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의 어느 호에 열거되었거나 포함되는(specified or included)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론 실무에서는 열거되어 있는 것보다 포함되는 것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다음 〈그림 2〉와 같이 불도저와 화물자동차 또는 헬리콥터에 전용되는 디젤엔진, 축전지, 속도계, 차량용 의자라 하더라도 이들은 불도저나 트럭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열거된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불도저나 화물자동차 또는 항공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경우라도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다.

〈그림 2. 열거된(특정) 호로 분류하는 부분품〉

불도저(제8429호)	화물자동차(제8704호)	헬리콥터(제8802호)	
			
디젤엔진(제8408호)	축전지(제8507호)	속도계(제9029호)	의자(제9401호)
			

③ 내용이 많아 지면관계상 기재를 생략하였다.[관세청 품목분류 검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특계(特掲) 호(특별하게 기록된 호) 라고도 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근거는 통칙 제1호이다. 즉,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해당 호의 용어와 관련되는 제16부 주 제1호타목^⑤, 제16부 주 제2호가목^⑥, 제17부 주 제2호마목·바목·사목^⑦에서 그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자와 같이 관련 주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호의 용어만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다름이 있다면 통칙 제3호가목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통칙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즉, 불도저의 부분품(제8431호)이나 화물자동차의 부분품(제8708호) 또는 항공기의 부분품(제8803호)보다는 제9401호의 의자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9401호의 의자에는 항공기용 의재(소호 제9401.10호)나 차량용 의재(소호 제9401.20호)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출입업자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거래하는 부분품이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열거되어 있거나 포함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참고적으로 제84류와 제85류의 열거된(특정)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 표2와 같다. 물론 이 표는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2. 제84류와 제85류의 열거된(특정) 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번호	품명	품목번호
1	펌프·기체 압축기	제8413호·제8414호
2	여과용 기기	제8421호
3	권양용이나 하역용 기계류	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86호
4	탭·콕·밸브 등	제8481호
5	볼베어링·롤러베어링과 공칭직경의 오차가 1% 이하이거나 0.05mm 이하 (어느 쪽이든 오차가 작은 것인 연마강구)	제8482호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과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폴리와 폴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제8483호
7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제8484호

⑤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불도저에 사용하는 속도계는 제84류로 분류할 수 없다.

⑥ 불도저에 사용하는 디젤엔진(제8408호)이나 축전지(제8507호)는 불도저의 부분품(제8431호)으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⑦ 이들 각 목에서 제8408호, 전기기기(제85류), 제90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화물자동차나 헬리콥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번호	품명	품목번호
8	전동기	제8501호
9	변압기와 그 밖의 기기	제8504호
10	전자 팩에 조립된 축전기	제8507호
11	전열용 저항체	제8516호
12	축전기	제8532호
1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스위치·퓨즈·접속함 등)	제8535호·제8536호
14	보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닛과 그 밖의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이나 배전용의 것	제8537호
15	램프류	제8539호
16	밸브와 튜브	제8540호
17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등	제8541호·제8542호
18	전기용의 탄소제품(예: 아크 램프용 탄소봉·탄소전극과 탄소브러시)	제8545호
19	각종 재료의 애자	제8546호
20	전기기기용 등의 절연용 물품	제8547호

2-2. 재료에 따른 분류

재료란 어떤 물품이나 부분품을 만들 때 바탕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품명이 나 용도라도 <그림3>과 <그림4>와 같이 구성 재료에 따라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류방법은 일반적으로 제7부(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 제8부(가죽이나 모피 제품), 제9부(목재 제품), 제11부(방직용 섬유 제품), 제13부(돌·도자·유리 제품), 제14부(귀금속 제품), 제15부(非金屬 제품)에 주로 적용된다. 이러한 물품은 특정한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경우라도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이와 같다. 물론 재료에 따라 분류할 때에 전부 한 가지 재료로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플라스틱과 종이로 된 보빈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그림 3. 보빈(bobbin, 실패)의 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플라스틱(제3926호)	목재(제4421호)	종이(제4822호)	철강(제7326호)
			

〈그림 4. 볼트와 너트의 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플라스틱(제3926호)	목재(제4421호)	철강(제7318호)	구리(제7415호)
			

이렇게 분류하는 근거도 2.1에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에 해당 물품명이 표기되어 있거나 관련 주(예: 제16부 주 제1호)에 그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16부 주 제1호다목에서 보빈(실패)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며, 또한 같은 주 제1호사목과 제17부 주 제2호나목 등에서 “볼트와 너트”는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해당 부나 류에서 제외하여 재료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토록 정하고 있다.

반면에 종이로 만든 보빈(실패)의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즉, 관련되는 호의 용어가 “종이로 만든 보빈(제4822호)”와 “직기의 부분품(제8448호)”이라고 각각 되어 있으면 “직기의 부분품”보다는 “종이로 만든 보빈”이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기 때문에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하더라도 제4822호로 분류한다. 목재로 만든 보빈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분류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재료에 따라 분류한 사례의 물품〉

1. 전기배출용 실링(실리콘수지)	2. 승강기 균형추(철강 단조물)	3. 자동차 헤파가스프링용 가황고무(제4016호)
		

[사례1] 실리콘 수지로 만든 링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은 전기밥솥의 압력누수방지용으로 사용하지만 제품의 특성상 전기밥솥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예: 비전기식의 압력밥솥은 제7321호로 분류한다) 전기밥솥의 부분품(제8516.60호)로 분류되지 않으며, 실리콘 수지의 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90호로 분류한다. (2009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2] 승강기 균형추(counterweight)는 선철과 고철로 주조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으로 40킬로그램부터 145킬로그램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승강기 작동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승강기의 부분품(제8431.31호)으로 분류하지 않고 철로 만든 단조물(HS 해설서 제7325호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균형추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325.99호로 분류한다. (2005년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3] 가황한 고무로 만든 링(ring) 모양의 성형물(직경 약 14.7센티미터)로 자동차 현가스프링(제8708.80호) 하단에 장착되어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는 물품이나 제17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4016호의 제품(조인트나 와셔 등)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함에 따라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4016.99호로 분류한다. (2013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특히 재료에 따라 분류할 때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특정 재료로 된 제품이 분류되는 마지막 호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호의 용어가 ‘~’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라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몇 개의 호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제3926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 ▶ 제4016호 :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 제4421호 : 그 밖의 목제품
- ▶ 제6914호 :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 ▶ 제7325호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 ▶ 제7326호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제7419호 :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따라서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 마지막 호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항이다. 재료에 따른 분류는 쉽고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확대하면 본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 부분품의 분류원칙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당연히 부분품도 호(또는 소호)의 용어이고 또한 제16부의 부분품은 몇 개의 예외적인 경우(예 : 도자로 만든 펌프와 그 밖의 제품 등)를 제외하고 구성 재료에 상관없이 분류된다는 HS 해설서 제16부 총설 규정 등과 상충될 수 있다.

확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우선, 앞의 [사례2]와 같이 HS 해설서에서 구체적으로 예시(균형추는 제7325호 분류한다)하고 있거나 또는 부분품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재료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앞의 사례1과 같이 비록 그 물품은 특정한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 용도나 기능으로 보아 다른 제품에도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료에 따라 분류될 여지가 있다.

2-3. 본체와 같이 분류

앞에서 설명한 2.1과 2.2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품일 때 비로소 본체 기계와 같은 호로 분류하거나 또는 본체 기계에 속한 부분품만을 일괄하는 호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6>과 같이 세탁기에 사용하는 탈수 통과 선풍기용 날개(재료는 플라스틱)는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본체와 같은 호로 분류하는데, 이들 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는 특정 소호(예: 제8450.90호와 제8414.90호)가 있다.

<그림 6. 본체와 같은 호로 분류하는 부분품>



<그림 7. 일괄 분류하는 부분품>



〈그림7〉과 같이 피스톤은 불꽃 점화식엔진(제8407호)이나 디젤엔진(제8408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거나 또는 공통으로 사용(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한다)되는지에 상관없이 제8409호로 분류한다.

또한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제8527호)나 텔레비전 수신기기용(제8528호) 안테나도 같은 원칙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 제16부에는 이와 같이 부분품만을 별도로 분류하는 호가 총 9개(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가 있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이 분류근거는 제16부 주 제2호나목과 다목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품은 특정한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전기적인 요소나 특성이 없는 부분품은 제8487호로, 그러한 요소나 특성이 있는 것은 제8548호로 분류한다.

앞의 2.1과 2.2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림6〉의 선풍기용의 전동기는 일반적인 전동기와 달리 선풍기의 날개를 삽입하고 고정시킬 수 있는 축(shaft)이 부착되어 선풍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이런 경우에 '전용부분품'이라 한다). 그렇더라도 전동기에 축이 부착되었다하여 선풍기의 부분품(제8414.90호)으로 품목번호를 변경시킬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HS 해설서 제8501호에서 '폴리·기어·기어박스나 수동식공구 구동용 플렉시블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는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선풍기전용의 전동기가 명백하더라도 "열거된 호에 우선하여 분류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8501호로 분류한다.

3. 자동차 등 수송기기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

3-1. 주 용도에 의한 분류

관세율표에서 수송기기는 그 종류에 따라 제86류부터 제89류까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제89류의 선박과 수상 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원칙적으로 제89류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부속품에 관하여는 다음 4항을 참고하면 된다).

따라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제17부 주 제3호]

〈그림 8. 자동차의 중요 부분품〉



이때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첫째,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이 부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림8〉에서 동력발생장치인 엔진(제8407호나 제8408호), 전기장치인 멀티스위치(제8537호)는 제17부에서 제외되는데,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그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3.2항의 제17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을 참고하면 된다.

둘째,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앞의 〈그림2〉를 참고하여 조향장치·제동장치 등과 같은 부분품이 제8429호의 불도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제8431호로 분류한다. 따라서 제8704호의 화물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때는 제8708호로 분류하게 된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와 헬리콥터에 사용가능하면 주 용도로 결정한다. 만약 주 용도를 정할 수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셋째,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는 것에는 가황한 고무로 만든 전동용 벨트(제4010호), 고무타이어(제4011호·제4012호), 예인용 로프(제5609호), 안전유리(제7007호), 백미러(제7009호나 제90류), 카펫(제57류), 속도계나 적산회전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샤프트(제8483호), 차량용 의재(제9401호) 등이 있다.

이들 류에는 부분품뿐만 아니라 부속품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그 범위와 대상이 넓어진다는 것도 유념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서 기계에 사용되는 기어박스나 트랜스미션은 제8483호로 분류하지만, 엔진동력을 자동차의 축이나 바퀴에 전달하는 기어박스나 트랜스미션은 제8708호로 분류한다. 그럼에도 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은 그 종류에 따라 제8409호나 제8483호로 분류된다.

3-2. 제17부에서 제외하는 물품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㉔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7부 주 제2호와 HS 해설서 제17부 총설)^㉕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s) · 와셔(washers)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질고무가 아닌 가황한 고무로 만든 그 밖의 제품(제4016호)^㉖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 제82류의 제품(공구)

라. 제8306호의 제품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제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제품

㉗ 보일러와 보일러용 장비(제8402호나 제8404호)

㉘ 발생로 가스발생기(예: 자동차용)(제8405호)와 제8406호의 증기터빈

㉙ 제8407호부터 제8412호까지에 해당하는 각종 엔진과 이들의 부분품

㉚ 펌프 · 압축기와 팬(제8413호나 제8414호)

㉛ 공기조절기(제8415호)

㉜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와 소화기(제8424호)

㉝ 권양용 · 취급용 · 적하용이나 양하용 기계(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30호 · 제8431호)

㉞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제8432호나 제8433호의 농업용 기계(예: 탈곡 · 파종 · 풀베기 등에 사용하는 부착물)^㉟

㊱ 제8474호에서 규정한 기계류

㊲ 제8479호의 windscreen wiping mechanism

㊳ 제8481호와 제8482호에 해당하는 제품

㊴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이나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 · 캠 샤프트 · 플라이휠 등)

㉔ 어느 호(또는 소호)에는 ‘부분품’만 분류되는 것(예: 제8715호)이 있고, ‘부분품과 부속품’을 함께 분류하는 것(예: 제8708호)이 있어 이와 같이 표시한 것이다. 부분품만 분류토록 규정한 호(또는 소호)에는 부속품은 분류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㉕ 각 목에서 ㉗, ㉘ 등으로 표시된 부분은 HS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인용한 것이다.

㉖ 따라서 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품의 종류(예: 흙받이나 바닥용 매트 등)에 따라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㉗ 이들은 주로 제8701호의 트랙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호환성 장치이다. 호환성 장치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킨 상태이거나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트랙터와 호환성 장치는 각각 분류한다.(제87류 주 제2호 참조)

바. 전기기기[제85류]

- ㉠ 제8501호나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
- ㉡ 제8505호의 전자석·전자클러치·브레이크 등[제8505호]
- ㉢ 축전기[제8507호]
- ㉣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용 전기식 점화장비나 시동장비[제8511호]
-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기기·신호기기·윈드스크린 와이퍼·제상기와 제무기[제8512호], 전기식 신호기기[제8531호], 그 밖의 차량·항공기나 선박용의 전기식 제상기·제무기[제8543호]
- ㉥ 자동차나 철도차량·항공기 등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기[제8516호]
- ㉦ 마이크론·확성기와 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 등
- ㉧ 무선송수신기와 수신기[제8525호나 제8527호]
- ㉨ 전기식 축전기[제8532호]
- ㉩ 제8535호나 제8536호의 전차용 집전기[集電器]와 그 밖의 집전장치와 퓨즈·스위치와 그 밖의 전기장치
- ㉪ 제8539호의 전기식 필라멘트 램프와 전기식 방전램프, 제87류 차량용의 실드빔 램프유닛[헤드램프]
- ㉫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제8544호], 흑연이나 탄소제품[제8545호], 애자[제8546호], 전기 절연용품[제8547호]

사. 제90류의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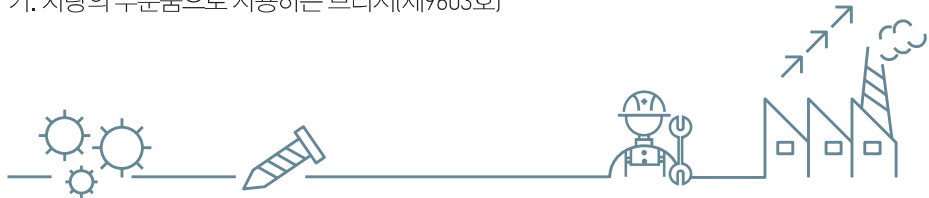
- ㉠ 사진용이나 영화용 카메라[제9006호나 제9007호]
- ㉡ 항행용 기기[제9014호]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 기기[제9018호]
-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밖의 기기[제9022호]
- ㉤ 온도계[제9025호], 유량계와 압력계[제9026호]
- ㉥ 적산회전계·택시미터·속도계와 회전속도계와 그 밖의 기기[제9029호]
-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31호]

아. 제91류의 물품[예: instruction panel clocks]

자. 무기[제93류]

차. 차량용 의자[제9401호], 제9405호의 램프나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브러시[제9603호]



3-3.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사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분류사례〉

Roof cargo box	Luggage side	Plastic tube for automobile fuel tank	Electric sun shade Assy
			

(사례4) 여행 중 스키장비·캠핑장비·짐 등 사유물의 보관과 보호를 위한 적재함(중량 12 킬로그램이고 적재중량은 50킬로그램)으로 유선형의 상판과 바닥부분으로 구성되며, 모두 플라스틱 주형으로 만든 것이다.

적재함과 같이 제시되는 특정한 장치를 통해 자동차 외부지붕의 받침대에 장착하도록 설계된 자동차용 부속품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8.99호로 분류한다(제51차 WCO HS 위원회 결정)

(사례5) 승용차 트렁크의 좌우측면의 덮개로 폴리에스테르부직포, 폴리프로필렌 보드 소재의 원판을 좌우측면의 모양에 맞춰 성형한 후에, 신솔레이트(또는 부직포) 등 흡음재를 이면에 부착하고 테두리 등에 홀 가공한 물품이다.

차체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㉔하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8.29호로 분류한다(2011년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6) 플라스틱(폴리아미드)으로 만든 관(직경 약 8mm, 길이 약 780mm) 양 끝에 플라스틱으로 된 연결구류가 결합된 물품으로 한 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Return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Canister(엔진이 정지할 때 연료탱크와 기화기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흡수·저장하는 부분품)에 연결되어 연료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이다.

소호 제3917.3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tube and pipe) 중에서도 연결구류가 결합된 것에 한정하여 분류토록 되어 있어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결합되었다하여 자동차의 부분품(연료탱크는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제8708호로 분류하고,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도 같은 호로 분류한다)으로 분류 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17.33호로 분류한다.

㉔ HS 해설서 제8708호에 luggage compartment(수하물 넣는 곳)은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사례기] 철제 프레임, 알루미늄 바(bar), 모터, 기어박스 등으로 구성되어 기계적 메커니즘을 갖춘 전동식 블라인드로 자동차 후면 유리창에 설치되어 햇빛이나 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고 차량 내부의 안락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
모터와 기어 등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블라인드를 접고 펴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1호에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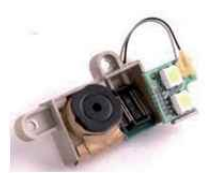
4. 모듈로 된 부분품의 분류

이 글에서 모듈(module)로 된 부분품이란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분조립품으로 연관되는 여러 가지 부분품이 하나로 집약된 것으로 교환 가능한 구성단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립공정의 단순화에 따른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의 절감 효과 등으로 자동차나 무선통신기기 등 각종 산업에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새시 모듈은 서스펜션 시스템(현가장치)(제8708.80호) · 조향장치(제8708.94) · 제동장치(제8708.30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도 진동 모터(Linear Vibration Motor)(제8501호) · 무선수신기(제8517호) · 스피커 · 마이크(제8518호) · 인쇄회로기판(제8434호) 등으로 구성된 물품들이 있다.

이와 같이 모듈로 된 부분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분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0. 각종 모듈로 된 부분품〉

1. 자동차 새시모듈	2. 카메라 모듈	3. TPS 디지털 카메라 모듈
		

4-1. 구성된 부분품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통칙 제3호나목)

이런 부분품을 명확하게 분류토록 정한 호나 소호는 없기 때문에 통칙 제3호의 각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견해이다. 이 통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호가 없기 때문에 이 통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특성의 결정은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르도록 HS 해설서 통칙 해설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성 요소로 된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 결정시에는 용적이나 중량보다는 가격이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할 수 없으면 통칙 제3호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결정한다.

4-2.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분류

다양한 구성 요소(부분품)로 결합되어 있으며, 완성품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또한 형태나 특성으로 보아 완성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는 견해이다.

물론 이와 같이 복잡하게 구성된 부분품을 통칙 제3호나목에 근거하여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즉, 완성품으로서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된 복합물품(예: 카메라와 헬리콥터로 구성된 드론, 무선통신기와 시계가 결합된 갤럭시 기어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적합한 호가 없기 때문에 통칙 제3호나목과 다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관련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정한 경우에는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통칙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 때 “완성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란 2.1에서 설명한 열거된 호로 분류되는 물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디젤엔진이나 액체펌프 또는 전동기와 같은 것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비록 이들이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도 부분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모듈로 된 부분품은 애초부터 특정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듈로 된 부분품을 확실적으로 통칙 제3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분류하려는 것은 올바른 분류방법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미 모듈로 된 부분품에 관하여 전향된 방향으로 품목분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림10>의 3의 물품(Glass window, ITO 센서, Touch IC 및 FPCB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디지털카메라의 LCD 화면 보호, 부품 파손방지, LCD 터치(정전용량 변화 감지)를 통한 카메라 조작 및 촬영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을 수행)을 2015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에서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제8529호)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5. 부속품과 부속기기의 정의 및 분류

관세율표에서 부분품과 비슷한 유형의 물품으로는 부속품과 부속기기를 들 수 있다. 이들의 분류도 중요하므로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5-1. 부속품

부분품과 같이 관세율표에 부속품의 정의가 규정된 것은 없으나, HS 해설서의 몇 곳에 정의된 부분이 있다.(주석 13과 14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부속품'이란 그 중요성이 이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종속물)으로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품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부속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물품의 사용이나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예: 카메라 삼각대)
- ② 주된 물품의 사용범위를 넓혀 주거나(예: 기계공구용 호환성 공구)^⑧
- ③ 주된 물품의 작동을 개선하며(예: 소총용 망원조준기)
- ④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함께 사용하면 제품이 의도하는 기능을 추가 발휘하게 하는 물품이며(예: 자전거용 짐 선반)^⑨
- ⑤ 어떤 특정물품에 전용되거나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예: 자동차 바퀴 덮개)

어느 호나 소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을 같이 분류(예: 제8486호와 제8522호 또는 제8708호)하면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부분품이나 부속품만을 분류(예: 제8409호와 제8479.90호 또는 제8715호)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당 호나 소호에 부분품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속품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부분품과 부속품의 구분이 필요하나, 실무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을 명확히 구분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5-2. 부속기기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란 온도계·압력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와 같이 주 기계에 부착(장착)되어 특정 기능(예: 측정·검사·제어하거나 조절)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증기발생보일러(제8402호)에 부착(장착)된 온도계와 압력계는 보일러용기에 담겨있는 액체나 증기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부속기기가 통상 주 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 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부속기기는 주 기계와 함께 제시(결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라도 상관없다)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검사·제어하거나 조절하도록 설계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따로 제시되거나 여러 기계를 측정·검사·제어하거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예: 컨트롤패널은 제8537호, 온도계는 제9025호, 압력계는 제9026호). 즉, 부속기기는 해당 기계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6. 결론

품목분류의 결과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등이 결정되므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FTA에서 원산지 판정의 핵심은 품목분류라 할 수 있으며, 완성품 못지않게 부분품의 품목분류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부분품은 그 종류도 많고 또한 원재료로부터 다양한 중간재 형태로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여러 개의 부분품을 결합시킨 모듈로 된 부분품의 거래도 활발함에 따라 부분품의 품목분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 ⑬ HS 해설서 제8466호에 의하면 “공작기계의 부속품”이란 보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공기계를 변환시킬 수 있는 호환성의 장치·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하여 특수한 작용을 행하는 장치와 같은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보조 장치를 말한다. 또한 HS 해설서 제8473호에 의하면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한 조작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이나 장치를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 ⑭ HS 해설서 제8448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속품이란 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급속히 소모되어 버리거나 혹은 상이한 작업을 위하여 상이한 종류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부분품의 정의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그 분류의 한계를 구분함에 있어 특히 어느 물품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재료에 의한 분류인지 아니면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하여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로인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도 과세관청과 수출입업자 또는 국가 간에 달리 분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부분품을 분류할 때에 유념할 사항은 우선 그 부분품으로 구성된 완성품이 속한 부나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관련 주에서 규정하고 있다)인지 또는 특정한 호에 열거되었거나 포함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HS 해설서의 총설이나 해당 호에서 별도로 제외되는 부분품인지 또는 열거되거나 포함되는 부분품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 수출입업자는 이 부분의 확인이 잘 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재료에 따라 분류할 때에도 완성품이 속한 부분품의 해당 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재료의 형태가 롤이나 판, 봉이나 선과 같은 반제품(semi-manufacture) 상태이면 원칙적으로 부분품으로는 분류될 수 없다. 완제품에 직접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알맞은 모양과 크기로 된 경우(블랭크를 포함한다)^⑤에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확정 전에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품목분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검색하여 사례를 확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래도 결정이 어려우면 품목분류의 중요도(관세율이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우리나라나 상대국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최근 기능의 다양화와 품질의 고급화 및 모듈로 된 부분품의 거래가 증가되는 추세로 미뤄 볼 때에 앞으로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범위가 더 넓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 이 글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필자 소속기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⑤ “블랭크(blank) 또는 반가공품”이란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나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전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블랭크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 이런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FTA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